

(붙임1)

신규상품 시행 세부사항 안내

1 시행 근거 및 배경

□ 시행근거

- 2017년 제2회 본부 운영위원회('17.06.15) "공제상품 다각화에 관한 사항" 의결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보험과-5044('17.09.14) "전국화물공제조합 긴급출동서비스 상품 신설 등 승인 통보"

□ 시행배경

- 조합원의 니즈를 충족하고 공제상품의 다각화를 통한 사업 경쟁력 유지
- 조합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도입 요청에 부응하고 손보사에 대한 사업 경쟁력 확보

□ 시행일시

- 2018. 02. 01 신규 및 갱신계약 차량부터
* 현재 계약중인 차량도 계약기간 내 담보 및 특약 가입 가능

2 신상품 개요

가. 자기신체사고 담보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차량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상해를 보상하는 상품

1) 가입대상 및 보상내용

- (가입대상) **대인 I, II, 대물** 담보종목에 계약중인 차량(단독 가입 불가)
- (보상내용)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함

* 사고유형(예시) : 1.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운행 중 화재, 폭발, 낙하 등의 사고(조합원 탑승 전제)

2) 조합원의 범위 및 보상한도

- (조합원 범위) **약관상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조합원*** 및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대인II 조합원 : 기명조합원(운송회사), 친족조합원, 승낙조합원, 사용조합원, 운전조합원

기명조합원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공제계약청약서의 조합원란에 기재된 조합원 다만, 기명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조합원으로 봅니다
친족조합원	기명조합원과 같이 살거나 같이 하는 친족으로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자
승낙조합원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자
사용조합원	기명조합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조합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운전조합원	다른 조합원(기명조합원, 친족조합원, 승낙조합원, 사용조합원을 말함)을 위하여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

- (보상한도) 발생손해(사망, 장해, 부상)에 따라 구분

▶ 사망/장해 : 보상한도 1,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4가지)
부 상 : 보상한도 1,500만 원 (1가지)

3) 할인·할증 적용기준

- (최초요율) 최초 가입시에는 자동차공제 일반공제 할인할증 요율 적용
- (분납할증) 일반공제와 같이 분납 가능하며 분납할증을 동일하게 적용

- (할증범위) 사고 건당 1점(10%)의 할증이 반영되며, 일반공제와 합산하여 적용
(*사고건수에 따른 특별할증에 하나의 사고 건수로 포함됨)

예시1) 평가기간중 대물사고 1건, 자기신체사고 1건이면 평가기간내 사고 2건으로 특별할증 30% 반영

예시2) 1건의 사고에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 물적사고의 복합사고일 경우

-> 대인 9급사고(2점) + 자기신체사고 1건(1점) + 물적사고(1점) = 4점(40%할증)

4) 연간분담금

(단위 : 원)

차종	공제가입 금액	사망 1천5백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1천5백만원	사망 3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3천만원	사망 5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5천만원	사망 1억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1억원
1종		40,380	53,310	68,770	104,420
2종		49,730	65,650	84,690	128,540
3종		39,120	51,690	66,690	101,190
4종		28,910	38,190	49,270	74,770
특정용도		40,040	52,850	68,190	103,500
특수작업		41,080	54,230	69,920	106,150
개별 2종		44,080	58,270	75,230	114,120
개별 3종		33,460	44,190	57,000	86,540
개별 4종		25,560	33,750	43,560	66,120

* 동 담보의 최저 분담금은 2,000원임

5) 지급공제금 산정

- (산정기준)

$$\boxed{\text{지급공제금}} = \boxed{\text{실제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 (사고형태 유형에 따른 산식)

공제액 無 (예: 단독사고)	사망	정액보상(가입금액 및 급별 한도 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급별 한도 내)
	후유장애	
	부상	
공제액 有 (예: 쌍방과실 사고)	사망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후유장애	
	부상	